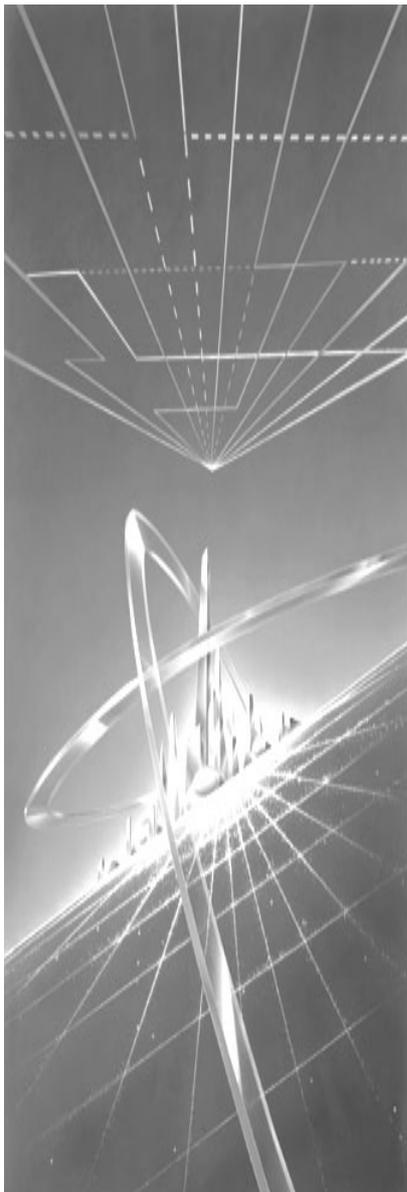


건설동향브리핑



제 108 호 (2006. 3. 2)

- 경제 : 2006년 조달청 발주 공사
2005년 건축 허가 및 착공 실적
- 정책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이슈 : 주계약관리방식 공동도급제 도입에 따른 실적평가 개선 방안
신도시 개발을 위한 준비...건설 기능인력 확충
- 정보 : 일본의 자연 재해 현황과 대응(I)
- 논단 : 건설업 양극화 해소,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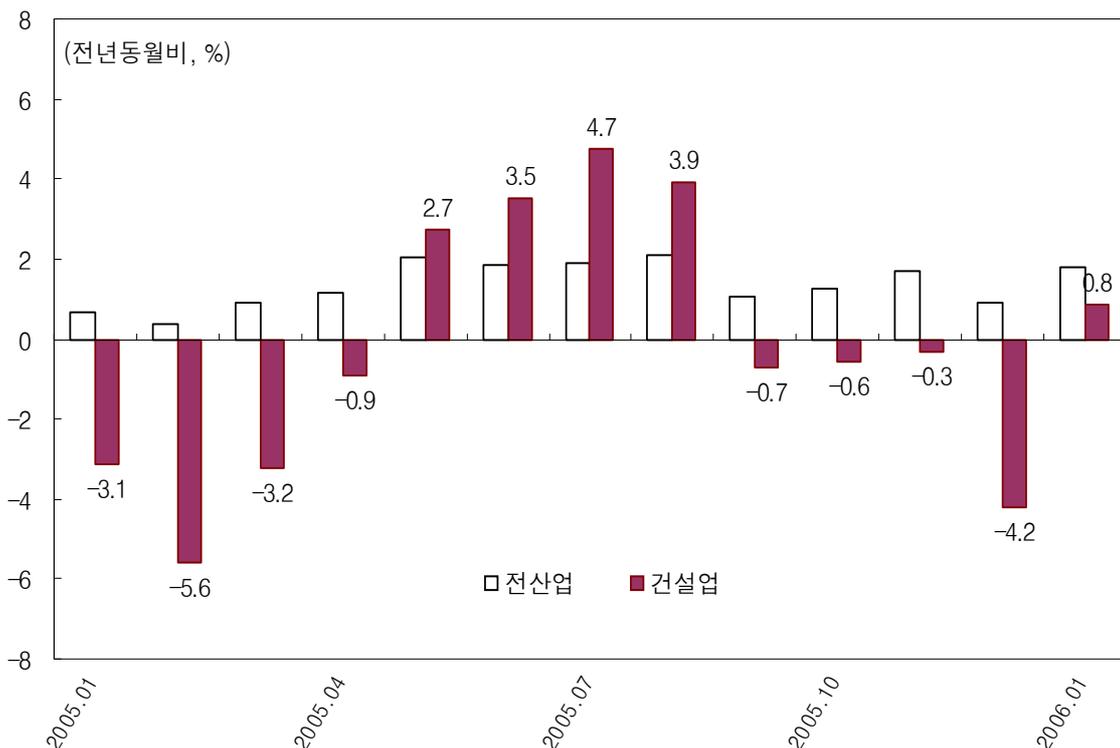
■ 리츠 설립 및 운용 내년부터 용이해져

내년부터 리츠 설립이 쉬워지고 투자 여력도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이 달 중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계획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리츠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고, 예비 인가와 본인가를 단일화해 설립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차입금 한도를 현행 자기 자본 200%에서 총자산의 200%로 확대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자기 자본의 30%에서 총자산의 30%로 높일 계획이다.

■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 2006년 1월 건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비 0.8% 증가한 170만명으로 나타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4개월간 감소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2006년 1월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 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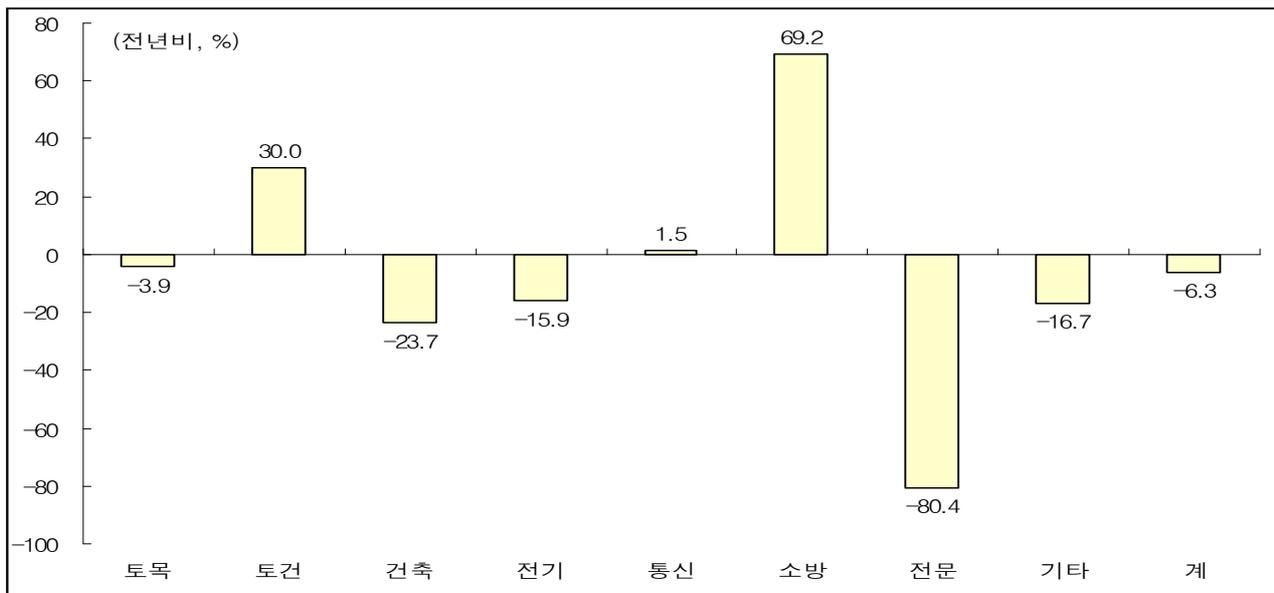
2006년 조달청 발주 공사

- 신규 발주 공사 6.3% 감소 -

■ 전년 대비 8% 감소한 수준

- 2006년 조달청 발주 공사액은 18조 9,333억원으로 나타남.
 - 조달청에서 발표한 ‘2006년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 조달청 발주 공사는 전년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BTL 사업 확대에 따라 조달청 발주가 감소한 데 기인함.
- 전체 발주액 중 신규 발주는 14조 2,907억원이며, 장기계속공사는 4조 6,426억원임.
- 신규 발주 공사는 2005년(15조 2,457억원)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10조 7,4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건공사와 건축공사는 각각 1조 3,839억원, 1조 7,085억원으로 나타남.
 - 토목, 건축은 전년 대비 각각 3.9%, 23.7% 감소하였으며, 토건은 30% 증가함.
 - 발주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이 9조 2,6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4조 5,255억원으로 나타남.

2006년 신규 발주 공사 공종별 증감률



자료 : 조달청.

2005년 건축 허가 및 착공 실적

- 수도권 지역 크게 감소 -

■ 건축 허가 면적, 건축 착공 면적 모두 감소

- 2005년 주택시장의 가격은 크게 상승함.
- 반면, 2005년 건축 허가 실적은 1억 1,150만 평방미터로 2004년 대비 5.1% 감소함.
 - 용도별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주거용이 5,028만 평방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
 - 공업용과 상업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업용은 전년 대비 24.5%나 감소함.
- 건축 착공 면적은 8,419만 평방미터로 2004년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각각 8.9%, 20.1% 감소함.

2005년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건축 허가 면적					건축 착공 면적				
	2004	비중	2005	비중	증감률	2004	비중	2005	비중	증감률
합 계	117,461	100.0	111,506	100.0	-5.1	91,280	100.0	84,187	100.0	-7.8
주 거	50,099	42.7	50,281	45.1	0.4	34,587	37.9	31,502	37.4	-8.9
상 업	30,966	26.4	23,368	21.0	-24.5	27,244	29.8	21,764	25.9	-20.1
공 업	14,740	12.5	13,576	12.2	-7.9	12,909	14.1	13,720	16.3	6.3
교육,사회	8,860	7.5	9,862	8.8	11.3	6,439	7.1	6,992	8.3	8.6
기 타	12,796	10.9	14,419	12.9	12.7	10,101	11.1	10,208	1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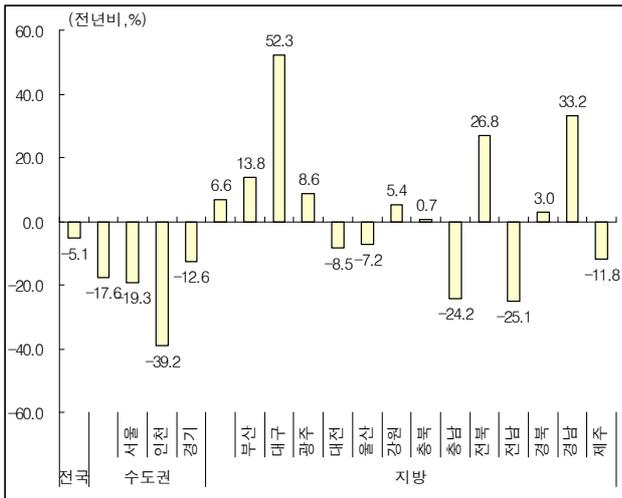
자료 : 건설교통부.

■ 지역별로는 수도권 감소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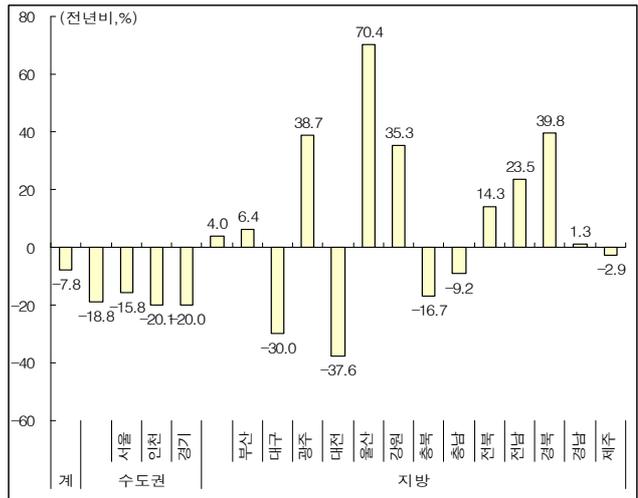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건축 착공 면적과 건축 허가 면적 모두 수도권 지역의 감소가 두드러짐.
-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 지역에서 17.6%나 감소함.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감소하였으며, 인천 지역은 39.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냄.
 - 반면 지방은 6.6% 증가하였으며, 대구 지역이 52.3%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2004년 주택공급이 많았던 충남 지역은 24.2% 감소함.
- 건축 착공 면적은 수도권 지역에서 18.8%나 감소함.

- 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두 감소하였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은 20% 수준의 높은 감소세를 나타냄.
- 지방은 4.0%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서는 대구(-30.0%)와 대전(-37.6%) 지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광주, 울산광역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지역별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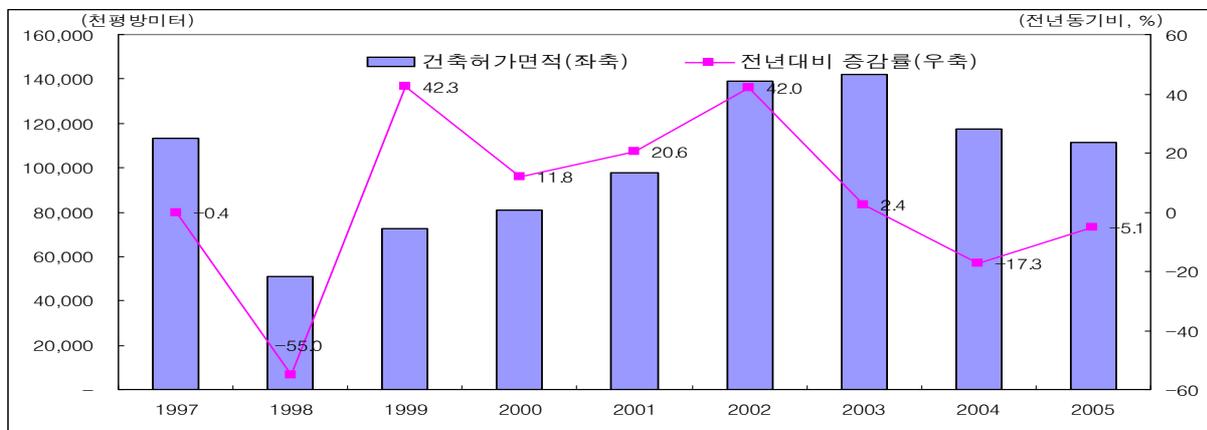


2005년 지역별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



-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은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로 공급 시장의 지속적인 위축은 향후 2~3년 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은 2002년과 2003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 2년째 감소세가 지속됨.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건축 허가 추이



자료 : 건설교통부.

강민석(책임연구원·mskang@cerik.re.kr)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지난 2월 14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됨으로써 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소개
 -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 지정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의 이전이 예상되는 부지’가 포함
 - 이 법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된 총괄 계획가, 사업협의회, 총괄 사업관리자 등에 대한 구체적 구성 요건 및 기준이 제시
- 재정비 촉진 사업 중 특히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됨.
 - 재정비 촉진 사업은 각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 시행자를 그대로 사업 시행자로 인정하나,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민간의 조합 결성을 통해 이루어지던 「도정법」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공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하는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재정비 촉진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시설사업

■ 도시 재정비 사업의 계획 기능 강화, 다양한 사업 주체 신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없는 “총괄 계획가” 및 “총괄 사업자” 제도 신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기능 및 공적 관리 기능을 강화
 - 현재 제시되어 있는 시행령(안)에 의하면 ‘총괄계획가’(법 제9조 3항)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 재정비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가진 자로,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을 담당.

- 총괄 사업관리자(법 제14조)는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중에 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재정비 촉진 사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 관리,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
- 또한 전문가와 공무원, 사업 시행자들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법 제17조)는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기구로서 총괄 계획가 및 총괄 사업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한 용적률, 용도 등 건축 규제 특례 많아

- 도시 재정비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제한의 예외 규정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계획 수립이 가능
 -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상한선 적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 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 확대가 가능함.
 - 이외에 학교시설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소형 의무 비율) 및 과밀부담금의 적용에 대한 특례가 인정
 - 단,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마련

■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적신호, 기존 사업장도 공공과 경쟁 불가피

- 재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특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를 포함시켜야 하고 총괄 사업관리자 등의 공공부문 개입이 불가피하여 민간 건설업체들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3년 이후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재개발의 경우(2005년 주택 수주의 10% 이상 차지) 민간 건설업체는 단순 시공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일부 단지들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 주공 등의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공공 부문과의 경쟁이 예상됨.

김현아(부연구위원·hakim@cerik.re.kr)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 도입에 따른 실적평가 개선 방안

-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를 제정·공포(2006.1.2)하면서 일반과 전문간 겸업이 허용되는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일반과 일반, 또는 일반과 전문간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 도입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의 실적평가 방법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 중인 일반과 전문간 건설업 통합 및 업종 구분 체계 재조정 추진에 있어, 전문업종의 실적인정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으로 실적평가 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검토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의 의미와 건설업계 영향 검토

- 현행 업역 체계하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의 도입이 갖는 의미는
 - 건설업체가 일반과 전문간 상호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업종간에는 입찰 단계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는 건설업계 내 경쟁 구도를 넓히고 생산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중견 이하 업계 및 전문건설업계에게 시장 참여 구도의 변화와 함께 상당한 구조 조정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공동 이행 방식과 다른 점은 거의 없음.
 - 일반건설업자는 공사 전체의 관리 또는 복합 공종 공사 부분 수행
 - ※ 전문건설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업종의 단일 공종 공사 부분 시공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 실적 평가 개선 방안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의 개념에 부합되면서 건설업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
- 실적평가 대상자
 -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동도급 원리에 따라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평가받는다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주계약자는 구성원 중 일반건설업자가 있을 경우 실적을 합산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계약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
- 평가기준 규모 및 배점
 - 평가기준 규모는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는 당해 발주공사 규모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공종만 분담하여 시공하므로 실적평가 기준 규모는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맡은 공사 부분의 규모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함.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반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보유한 실적과 합산하여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실적평가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 실적평가 배점은 전체 공사 규모 중 주계약자를 포함한 일반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부분과 각각의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의 구성비(당해 발주공사 추정가격 조서상의 금액 비중)로 안배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 평가 대상 실적
 - 일반과 전문건설업자의 실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각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함.
 - 평가 대상 실적은 일반건설업자의 경우 일반공사 실적(PQ 대상 또는 실적제한 공사 : 최근 10년 동일공사 실적, 기타 제한 : 최근 5년 업종 실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최근 5년 당해 전문업종 실적으로 각각 평가

■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 조치 검토 필요

-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왜곡 방지를 위해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는 공사의 계획·관리를 위한 실적 보유 최저 한도(예 : 적어도 당해 발주공사 규모 대비 1배 이상)를 별도의 자격 요건으로 함.
- 건설업 계층간 시장 구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실적평가 배점 합산 산출에 있어 전체 공사 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부분의 구성비가 일정 비율(예 : 50~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하여는 실적평가 배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도시 개발을 위한 준비...건설 기능인력 확충

- 건설 기능인력이란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를 의미함. 이들은 건설 생산 과정에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목적물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설계도면 속에 존재하는 건설 생산물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기계화 시공 및 PC 시공 등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시 구매자가 원하는 설계도면 속의 목적물을 건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건설 기능인력의 역할이 지대함을 부인하기 어려움. 특히,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보다 중요해지는 미래에는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당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급증을 생각해야 함.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의 인력 수요는 1997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주택 200만호 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인력 부족 및 노임 급등 현상을 상기해야 함. 고령화가 지속되어 숙련 인력 기반이 와해되면 저숙련 인력에게 고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성, 안전성, 고효율 및 고품질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됨.

■ 건설 기능인력 확충의 기본 방향

-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양자가 병행되어야 함.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숙련 인력의 부족임.
 - 수요 감소란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인력 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숙련 인력 수요까지 대폭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급 증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음. 먼저 외국인 인력의 경우 조공이나 일반 공처럼 비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언어소통의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 때문에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활용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보다는 통제 가능한 공식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야 함.
 - 내국인 중 진입을 촉진하기 쉬운 계층은 중장년층으로서 이들 역시 비숙련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움. 결국 핵심적인 숙련 인력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천은 내국인 청년층임.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자녀수가 하나나 둘에 그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이탈 방지 및 진입 촉진 :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근로 조건 개선

-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보호 및 고용 안정의 제고임. 고용보험 전자카드로 행정적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료 확보를 통해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줌. 겨울철 등 생산 중단 시기에도 고용 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직접 지원함.
 - 둘째,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 시간 단축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등의 설치 및 청결을 위해 고용보험 또는 산업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 또한 주40시간제 이전에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되 추가적인 주휴일 수당을 원가에 반영해야 함.
 - 셋째, 산업 재해의 감소임. 산재 예방 노력 자체를 제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기초 산업 안전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안전 효과를 제고해야 함.

■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전국적인 취업 알선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켜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취업 알선망을 전국적으로 가동시키고 노동부가 이를 지원함.
 - 여기에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역할을 부여해 건설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주어야 함. 사업주는 이러한 경력 정보를 통해 숙련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경력 있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수주 과정에서 우대받도록 함.

■ 숙련 인력 양성 : 일시적 TFT로는 대응 불가, '상설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숙련인력 양성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은 '현장성'과 '직업 전망'임.
 - 직업 전망의 제시를 위해 자격증과 경력을 기초로 건설 기능인력의 정의와 활용을 「건설법」에 명시해야 함. 이것이 청년층의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건설현장의 초보 기능공, 준기공, 조공 수준의 근로자와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임.
-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훈련시설을 배치하고 양성 과정 및 향상 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공고 교육 과정의 현장 연계, 자격 체계 및 검정 체계의 현장성 제고, 숙련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함.

일본의 자연 재해 현황과 대응(I)

■ 자연 환경

- 일본은 지구 표면적의 0.074%이며, 육지의 0.25%에 지나지 않으나,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활화산이 있고, 태풍과 홍수, 폭설 등의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함.

화산	전 세계 활화산의 7.1% (108개)
지진	일본은 4개의 지각판 위에 있으며, 수많은 지진이 발생함. M6.0 이상의 전세계 지진 발생수의 22.2%를 차지함.
폭우	평균 강우량 1,714mm이며, 이는 유럽의 2배임. 인구의 50%와 자산의 75%가 범람 지역에 위치함.
태풍	매년 평균 12개의 태풍이 지나감.
강	일본의 강은 경사가 급한 편이어서 범람하기 쉬우며, 산사태도 자주 발생함.

- 1950년까지 대형 태풍과 지진 등을 포함하여 일본에서의 재해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킴. 1974년에서 2003년 사이 30년 간 발생한, 전세계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17%가 일본에서 발생함.
- 일본은 홍수 조절과 같은 많은 재해 예방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1960년 이후에는 산사태 및 홍수 대책이 시스템적으로 실행됨과 동시에 재해대책 기본 법안(1961년)이 제정됨.
-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1974년과 2003년 사이 발생한 일본의 재해 사망자는 전세계의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0.5%에 불과함.

■ 사회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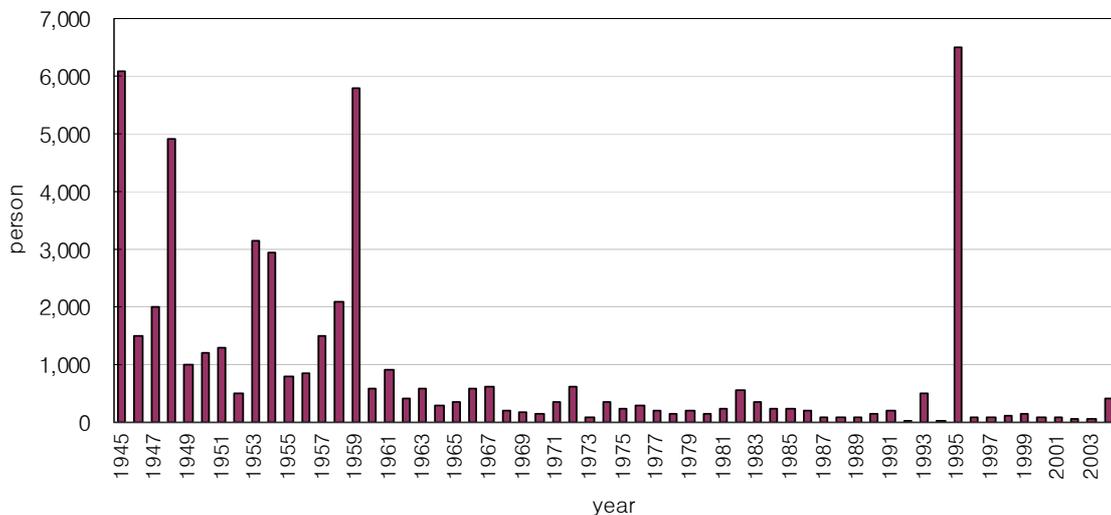
- 일본은 극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로 대표되는 전후 기간 동안 자연 재해에 대하여 더욱 취약해짐.
- 도시화 과정을 통한 재해 위험성 증가 :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취약한 곳과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 취약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됨으로써 침몰이나 홍수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수가 증가함.
- 대도시 지역의 인구와 재산, 산업의 집중화 현상 : 인구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재해가 도시 지역을 강타하였을 경우, 인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발생함.

- 연소자 감소 및 노년층 증가로 인한 재해 예방 기능의 저하 : 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지원” 과 더불어 “자력 구조” 및 “상호 구조” 가 필요함. 인구의 구성이 노령화되는 것은 “자력 구조” 및 “상호 구조” 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우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자력 구조” 및 “상호 구조” 의 개념이 상실됨.

■ 일본의 재해 : 과거와 미래

- 전후 경향 : 감소 추세지만 대형화
 - 전후 1950년대에는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태풍과 지진이 매년 발생하였으며, 특히 1945년의 태풍 마쿠라자키(3,756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 1948년의 후쿠이 지진(3,769명), 1959년의 아이세만 태풍(5,098명) 등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음.
 - 아이세만 태풍 이후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수는 급속도로 줄었는데, 이는 정보 전달 방법 및 기후 예측, 경고 기술의 개선, 관련 제도의 확대 등 재해 예방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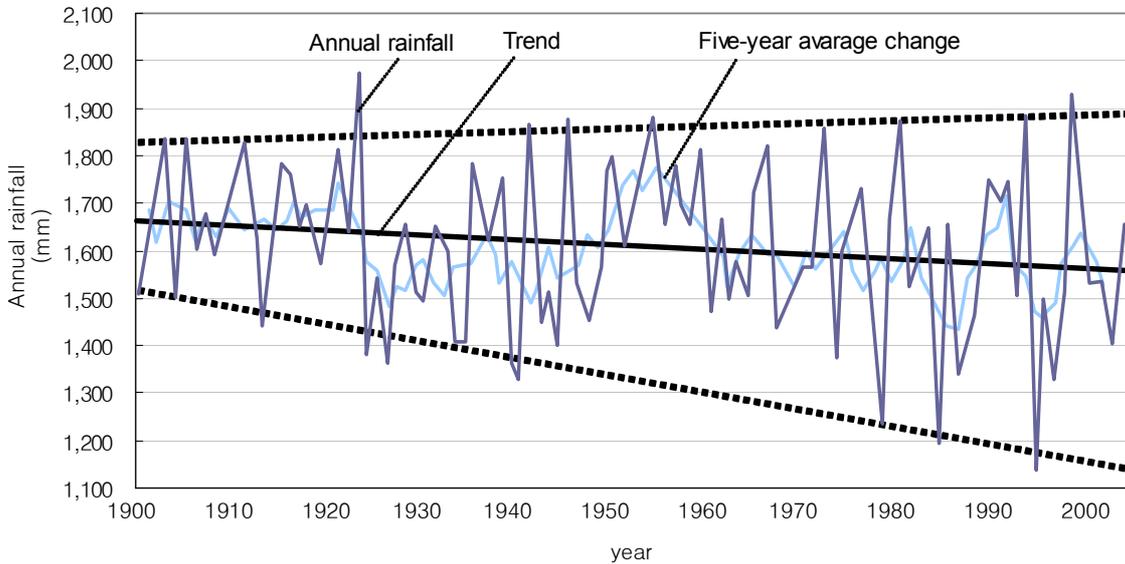
일본의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



- 1993년의 홋카이도-난세이-오키 지진(230명), 1995년 한신-아와지 지진(6,436명의 사망 및 실종자와 10조엔의 피해), 2004년 10월의 니가타-추에쓰 지진, 2005년 3월의 후쿠오카-세이호우-오키 지진, 동년 8월의 미야기-오키 지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최근 경향 : 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 증가
 - 잦은 지역성 폭우와 지방 하천의 범람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전체 적인 강우량은 감소되는 추세이나, 강우량의 변화 폭은 확대됨. 도시형 홍수로 특징지어

지는 피해는 도시 범람과 지하 공간의 침수, 교통 혼잡 등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일본의 강우량



- 대형 지진과 예측 불가능한 진앙지 지진 : 도쿄 바로 아래에 있는 남부 칸토지진(약 6.7에서 7.2 규모)은 칸토대지진만큼은 아니지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으며, 일본해구나 치시마해구의 해구 지진은 40년에 한 번씩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난카이해구에서 발생하는 난카이지진이나 히가시 난카이 지진 역시 금세기 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음.

	토카이지진	토난카이지진	난카이지진	미야기켄오키지진
10년 이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 있음.	10%	10%	10%
20년 이내		30%	20%	81%
30년 이내		50%	40%	98%

* 교육, 문화, 체육, 과학, 기술성의 지진연구진흥본부 데이터에 기초함.

* 토카이지진을 제외한 3가지 사례는 2001. 1. 1일 현재 기준임.

- 일본은 여전히 자연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설물의 지진에 대비한 장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62.5%와 체육관의 48.0%만이 재해 대비 장비를 개선함.

김우영(부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건설업 양극화 해소,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금년 들어 양극화 해소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양극화 이슈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양극화 문제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상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대중소 업체간의 경쟁력 격차 확대 문제가 바로 양극화 문제인 것이다.

여타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경쟁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수주 경쟁력에서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금까지 건설업계는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규모 또는 업역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양극화 해소는 이러한 좁은 시각의 접근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진정한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물량의 배분을 논하기 전에 건설시장을 키우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간 양극화 현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 동력이 첨단 산업에 집중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은 어느새 장래성이 없는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둘째, 건설산업의 시장 질서를 건전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지나치게 양산된 무자격 부실 업체의 난립으로 성장 잠재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민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 건전한 중소 건설업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건설업의 양극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대중소 업체간의 물량 배분을 위한 방안은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적대적 관계를 통한 방안은 중소 업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채 대중소 업체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우리나라도 건설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파트너링제도와 같은 건설 참여자간의 적극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영선(선임연구위원·ysyoon@cerik.re.kr)

■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연구원은 3. 10(금) 10:00, 3층 소회의실에서 이규방 위원장 등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금번 제4차 회의는 2005년 11월 구성된 2차 3개 작업반 ‘기술·인력반’, ‘문화혁신반’, ‘신수요창출반’이 지난 3개월여 동안 진행한 1차 초안을 보고하고, 위원들로부터 향후 보완 및 수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월간 건설경기동향」 발간

- 연구원에서는 건설업체, 건설 유관단체 등 건설산업 종사자 및 건설 관련 정부 관계자들에게 월단위의 건설경기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대한 인식확산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06년 2월부터 「월간 건설경기동향」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간.
- 「월간 건설경기동향」은 매월 10일경 홈페이지(연구원 발간물→동향 및 전망)를 통하여 PDF 형태의 파일로 등재.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획조정실(02-3441-0815, 0896)로 문의하면 됨.